함안가야 휴니온아르떼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3항에 따른 공급대상(함안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게 우선공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자는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는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청약 접수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 의 당첨(임대주택, 민간사전청약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해 사업주체 본사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체 본사 방문 신청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12(예정)]에 당사의 홈페이지(www.함안휴니온아르떼.com)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을 충분히 안내 및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 공급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58-1외4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27층 1개동 총 92세대 중 일반분양 60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 총 5세대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입주예정월 : 2028년 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미정(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주택형 안내

구분	주택형	타입	주택형별 계약면적					일반분양 총 세대수	기관추천 배정호수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포함)	합계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민영주택	084.4626	84	84.4626	29.5367	113.9993	58.4287	172.4280	20	5
	113.7696A	113A	113.7696	38.1341	151.9037	78.7024	230.6062	20	-
	113.4850B	113B	113.4850	37.7000	151.1850	78.5056	229.6906	20	-

■ 기관별 배정세대 안내

구 분				84		배정세대 소계	예비세대 소계
				배정	(예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보훈처	대구지방보훈청 보훈복지팀	국가유공자 등	1	(5)	1	(5)
			장기복무제대군인	1	(5)	1	(5)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1	(5)	1	(5)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중소기업 근로자	1	(5)	1	(5)
	경상남도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력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1	(5)	1	(5)
	계			5	(25)	5	(25)

■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며 대상자 추천 시 청약 주택형 필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추천세대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2 공급일정 안내 [예정]

구 분	일 정 (예정)	비 고
입주자모집공고	2026.06.12. (금)	* 일간신문 및 사업주체 분양 홈페이지 (www.함안휴니온아르떼.com)
특별공급 접수	2026.06.22. (월)	* 인터넷 신청(www.applyhome.co.kr) (09:00~17:30) * 사업주체 본사 신청 시(10:00~14:00)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사업주체 본사 방문접수가 가능함 단, 청약 신청시 자격입증 서류를 모두 지참하신 후 내방
당첨자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2026.06.30. (화)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 당사 분양 홈페이지 (www.함안휴니온아르떼.com)
계약 체결	2025.07.11. (토) ~ 2025.07.13. (월)	* 장소 : 사업주체 본사(경남 함안군 가야읍 성내남길 186,207호) * 시간 : 10:00~16:00

※ 청약홈(www.applyhome.co.kr)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구분	내용
기본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통보된 분 추천 대상자 : 해당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예비 대상자 : 해당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입주자 저축 구비여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필요 없음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무주택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공급대상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2025.10.17.(금))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소유로 간주 ※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시행일('18.12.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가능.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제외)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있는 경우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제외)

예치금 안내	

구분	김천시 또는 경상북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지역별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 업무수행 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단,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주택의 동·호배정은 동별, 층별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별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당첨 동·호수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업주체는 동·호수 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특별공급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을 사용한 경우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한기간 중 당첨제한 등)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당첨 취소, 공급계약 미체결, 공급계약 해약이 있을 경우 선정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위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신청 한 예비대상자로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에 한함)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 발표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홈페이지에서 개별조회 가능합니다.
 (개별통지 불가, 본인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있는 경우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분양권 불법 거래시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 불법 거래시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상기 청약 계획 및 일정은 인허가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다른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예비대상자는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의 미달로 추가 추첨하여 당첨자로 되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2026.06.12.(금)예정]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에 최종 통지된 대상자는 통지 시 기재된 주택형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신청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내역과 상이하게 청약접수가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 17 : 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 접수 중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전 서류 확인 및 관계기관의 전산검색을 통해 과거당첨사실, 주택소유사실 등 입주대상자 및 세대원의 자격확인을 통해 부적격 사항 확인 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청약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부적격자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며, 이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통보한 사항(주택형 등)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본 공급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5.10.31. 시행 및 개정된 관련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58-1외 4필지



■ 사업주체 본사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성내남길 186, 206



■ 분양문의 : (www.함안휴니온아르떼.com)

※ 본 안내문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최종 입주자모집공고 및 당사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